

# 남양주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

# 검토보고서

2024. 10. 21.

도시교통위원회전 문 위원

# 남양주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

#### 1. 제안경과

○ 본 동의안 2024년 10월 10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도시교통위원회에 회부 된 안건임.

#### 2.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필요성

- 추진 근거
- 「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」제12조
- 「남양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」제20조
- 「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제6조
-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
  - 관내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시설에 대한 사전·사후 점검 및 관리를 위한 "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"를 「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에 의거하여 역량 있는 전문기관에 민간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함

## 3. 위탁사무 내용

- 남양주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운영 사항
- 센터의 운영 및 관리
-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적합성 검토 및 실태조사
- 이동편의시설 관련 교육 및 홍보 등

## 4. 민간위탁 기간

- 2025. 5. ~ 2026. 12.(1년 8개월)
  -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의 등 관련 행정절차 이후 개소 예정

# 5. 수탁기관 선정방식

○ 수탁기관 공개모집 및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선정

# 6. 소요예산 및 산출 근거

○ 소요예산 : 100백만원[2025년 본예산(안), 도비30% / 시비70%]

(단위: 천원)

구분	산출내역	금액
	합 계	100,000
인건비	급여(기술요원 2인), 제수당, 사회보험부담금	69,542
운영비	수용비 및 수수료, 여비, 차량비, 공공요금 등	23,458
재산조성비	사무가구, 전산용품 등	7,000

# 7.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

구 분	검 토 결 과
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	■ 「남양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」제20 조 제4항에 의거 업무수행에 적합한 비영리법인 또는 남 양주도시공사에 위탁하여 운영 가능
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	■장애인·고령자 등 보행 이동에 어려움을 겪는 교통약 자의 이동편의를 위해 제공되는 사무로 민간의 전문 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 가능
경제적 효율성	■비영리법인 기관·단체에 위탁을 통해 공공 운영 대비 예산 절감 가능
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	■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적합성 검토에 대한 축적된 경험 및 전문성을 통한 효율적인 업무추진 가능
성과 측정의 용이성	■분기별 실적보고 및 이용자 만족도조사 등을 통한 사업 개선 및 발전 도모에 용이

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	■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7조 (지도·감독)에 따라 수탁기관에 대한 지도 및 감독, 점검을 통하여 본 위탁 사무의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제고
민간의 서비스 공급 시장여건	■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뿐만 아니라 교통수단, 여객시설, 도로의 다양한 이동편의시설에 대해 적합성 검토를 실시하여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에 이바지

#### 8. 향후 추진계획

○ 2025. 2. : 공개모집

○ 2025. 3. :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의

○ 2025. 4. : 위·수탁 협약 체결

○ 2025. 5. : 기술지원센터 개소

### 9. 검토의견

- 본 동의안은 「지방자치법」 제104조 제3항과 「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6조에 따라 '남양주시 교통약자 이동편 의시설 기술지원센터' 운영 관련 사무를 민간에게 위탁하고자 의회 동의를 얻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입니다.
- 먼저, 기술지원 센터의 설치는 「남양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」제20조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, 「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」제12조에 따라 교통수단(버스, 철도 등) 및 여객시설(정류장, 터미널 등), 도로(보도, 육교 등) 등 이동편의시설의 설치기준 적합성 심사 및 실태조사 업무 등을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현재는 '경기도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'에 의뢰하여 관련 업무를

추진하고 있으며, 향후 왕숙지구 및 양정역세권 택지 개발에 따른 업무 수요가 증가할 것이 예상되기에 우리시 기술지원센터의 필요 성과 민간 위탁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며, 현재 도내 3개 시가 기술 지원센터를 위탁 운영 중에 있습니다.

# 〈참고 1〉 경기도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검토 의뢰 현황

계	2020	2021	2022	2023	2024. 9월
315건	61건	46건	55건	84건	69건

# 〈참고 2〉 도내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운영 현황

구 분	경기도	수원	용인	안산
개 소 일	○ 2015년	○ 2017년	○ 2022년	○ 2023년
운영기관	○ 지체장애인협회	○ 지체장애인협회 수원시지회	○ 지체장애인협회 용인시지회	○ 지체장애인협회 안산시지회
운영방법	○ 민간위탁	○ 민간위탁	○ 민간위탁	○ 민간위탁
운영인원	○ 센터장(겸직) ○ 사무처장(겸직) ○ 직원(5명)	○ 센터장(겸직) ○ 직원(2명)	○ 센터장(겸직) ○ 직원(2명)	○센터장(겸직) ○직원(1명)
예 산	○ 342,000천원	○ 130,873천원	○ 127,262천원	○ 53,747천원

# 붙임1 관계법령

# □ 교통약까의 이동편의 증진법

[시행 2024, 2, 17.] [법률 제19674호, 2023, 8, 16., 일부개정]

#### **제2조**(정의)

-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[개정 2014.1.7 제12216호(도시철도법). 2014.1.14 제12248호(도로법). 2016.3.29 제14113호(공항시설법). 2016.3.29 제14115호 (항공사업법), 2016.3.29 제14116호(항공안전법), 2020.12.22, 2022.1.18, 2023.9.14] [[시행일 2024.9.15]]
- 1. "교통약자"란 장애인, 고령자, 임산부,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,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.
- 2. "교통수단"이란 사람을 운송하는 데 이용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운송수단을 말한다.
- 가. 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」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 용되는 승합자동차(이하 "버스"라 한다)
- 나. 「도시철도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의 운행에 사용되는 차량
- 다. 「철도산업발전기본법」 제3조제4호에 따른 철도차량 중 여객을 운송하기 위한 철도 차량
- 라. 「궤도운송법」 제2조제3호나목의 궤도차량 중 사람을 운송하는 궤도차량
- 마. 「항공안전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항공기 중 민간항공에 사용되는 비행기
- 바. 「해운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선박
- 사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수단
- 3. "여객시설"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여객의 교통수단 이용 을 위하여 제공되는 시설 또는 인공구조물을 말한다.
- 가. 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」 제2조제5호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 및 같은 법 제3조 제1항제1호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정류장
- 나. 「도시철도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 중 차량을 제외한 도시철도시설
- 다. 「철도산업발전기본법」 제3조제2호에 따른 철도시설
- 라. 「궤도운송법」 제2조제3호에 따른 궤도시설 중 궤도차량을 제외한 시설
- 마. 「도시교통정비 촉진법」 제2조제3호에 따른 환승시설
- 바. 「공항시설법」 제2조제3호 및 제7호에 따른 공항 및 공항시설
- 사. 「항만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무역항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연안항에 설치되어 있는 항만시설

- 아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인공구조물
- 4. "도로"란 「도로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(「도로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도로의 부속물을 포함한다) 및 같은 법 제108조에 따라 같은 법이 준용되는 도로를 말한다.
- 5. "교통사업자"란 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」, 「도시철도법」, 「철도사업법」, 「궤도 운송법」, 「항공사업법」, 「공항시설법」, 「항만법」, 「해운법」 등의 관계 법령에 따라 교통행정기관으로부터 면허·허가·인가·위탁 등을 받거나 교통행정기관에 등록·신고 등을 하고 교통수단을 운행·운항하거나 여객시설을 설치·운영하는 자를 말한다.
- 6. "교통행정기관"이란 교통수단의 운행·운항 또는 여객시설의 설치·운영에 관하여 교통 사업자를 지도·감독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,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특별 자치도지사(이하 "시·도지사"라 한다)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을 말한다.
- 7. "이동편의시설"이란 휠체어 탑승설비, 장애인용 승강기, 점자블록 등 장애인을 위한 보도(步道), 임산부가 모유수유를 할 수 있는 휴게시설 등 교통약자가 교통수단, 여객시 설 또는 도로를 이용할 때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설과 설비를 말한다.
- 8. "특별교통수단"이란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휠체어 탑승설비 등을 장착한 차량을 말한다.

[전문개정 2012.6.1] [[시행일 2012.12.2]]

#### 제10조(이동편의시설의 설치기준)

- ①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이동편의시설의 종류는 대상시설의 규모와 용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②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이동편의시설의 구조·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은 국토 교통부령으로 정한다. [개정 2013.3.23 제11690호(정부조직법)]
- ③ 이동편의시설에 관하여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「장애인·노인·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」 등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 [전문개정 2012.6.1] [[시행일 2012.12.2]]

#### 제12조(기준적합성 심사)

- ① 교통행정기관은 교통수단과 여객시설에 대한 면허·허가·인가 등을 하는 경우 교통수단과 여객시설에 설치된 이동편의시설이 제10조에 따른 설치기준에 맞는지를 심사하여야한다. [개정 2020.12.22] [[시행일 2021.6.23]]
- ② 교통행정기관은 제1항에 따른 심사를 하는 경우 미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 등 교통약자 관련 법인 또는 단체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. [신설 2020.12.22] [[시행일 2021.6.23]]
- ③ 교통행정기관은 제1항에 따른 심사 결과 교통수단과 여객시설에 설치된 이동편의시설이 제10조에 따른 설치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교통사업자에

- 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. [신설 2020.12.22] [[시행일 2021.6.23]]
- ④ 제1항에 따른 이동편의시설 설치의 기준적합성 심사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. [신설 2020.12.22] [[시행일 2021.6.23]]

[전문개정 2012.6.1] [[시행일 2012.12.2]]

# □ 남양꾸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꼬례

제19조(이동편의시설에 대한 점검) <u>① 시장은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설치된</u> 이동편의시설의 적합성 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.

- ② 점검대상 시설은 법 제9조에 따라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대상으로 규정된 시설로한다.
- ③ 사전점검은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시설의 면허, 허가, 인가 및 도로사용 개시 전에 실시하며, 사후점검은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.
- ④ 그 밖에 이동편의시설의 점검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. [본조신설 2024.10.2.]

제20조(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) ① 시장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시설 이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남양주시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(이하 "센터"라 한다)를 설치·운영할 수 있으며,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.

-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.
- 1. 이동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정보제공 및 상담
- 2. 이동편의시설 설치ㆍ운영에 관한 기술지원
- 3. 법 제10조에 따른 이동편의시설의 설치기준에 맞는 설계도서 검토와 현장점검
- 4.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대상 시설의 이동편의시설이 적합하게 유지·관리되고 있는지 확인 ·지도
- 5.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현황에 관한 실태조사
- 6. 그 밖에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
- ③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.
- ④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기관 등에게 센터의 관리·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.
- 1. 사전·사후점검 업무를 수행할 전담 조직·인력 등 적절한 업무수행체계를 갖춘 비영리법인
- 2. 이동편의시설 관련한 기술지원 실적 또는 연구경력이 있는 비영리법인
- 3. 남양주도시공사
- ⑤ 시장은 센터가 설치되지 않았을 경우 법 제9조에 따른 대상시설에 대한 사전·사후 점검을 경기도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에 의뢰하여 그 결과를 반영할 수 있다.